

“연말정산 기간 1월 18일(목)부터 ~ 1월 22일(월)까지(휴일제외) 입니다”

2023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left is the HomeTax logo. A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7. 연말정산 미리...". Below the search bar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and 세무대리 납세관리. A central banner titled "홈택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 실시" (HomeTax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Survey) includes details about the survey period (12.5 to 12.18) and target audience. To the right is a "로그인" (Login) section with a "로그인" button and fields for "회원가입" and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Below the banner is a "방문자별 맞춤 메뉴" (Personalized Menu by Visitor) section with buttons for "개인(23)", "개인사업자", and "법인". A horizontal menu below this lists services like "국세납부", "민원신청", "종합부동산세", and "전자신고". At the bottom, there is a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Frequently Used Menu by Tax Schedule) section.

2024. 1. 2.

곰 소 초 등 학 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4년 1월 18일(목)~24년 1월 22일(일)까지 (일정 변경될수 있음)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 업로드 진행후 출력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4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4.1.15일 오픈예정) -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①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 ☞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

②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4.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 (나이스 입력사항 참조)

◆ 주소확인: 본인주소지 확인 및 수정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교직원 전체 제출 (가족 변동사항 및 자체감사 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수당대상자)	직계존속(부.모)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주소 및 세대주변동 사항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⑤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교직원 전체 해당
⑥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⑦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⑧ 월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⑨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4.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NEIS입력

-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클릭 →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 조회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 저장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기본내역

인별 선택	사용자	상호	사업자번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협은행...	104-86-39742	일반	256,28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협은행...	104-86-39742	대중교통	899,650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 전체월선택을 선택하면
- 전체월해제가 조회되며 근무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월을 선택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 확인 및 안경구매정보 등록하기

- 의료비를 클릭하여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확인, 안경구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자료가 조회되며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등록 됨

3. 주소변경방법: 기본메뉴 → 인사 → 인사기록 → 개인신상(기본사항)

4. 입력방법: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파일 업로드 시 ⑦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자가 인적공제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에 직접등록 가능)

* 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공제자료를 업로드 하는 메뉴로 ④PDF업로드에서 ⑤일괄내역이나 ⑥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5.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자료입력 메뉴

The screenshot shows the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Education Office) system interface. The main menu on the left is highlighted with red boxes and numbers 1 through 5, corresponding to the instructions below. The main area shows a calendar for December 2023 and a list of school-related events on the right.

< 입력사항 >

1.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첫 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번째줄(그밖의 자료)
-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이용)

2. 의료비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의 의료비는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3. 기부금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기부금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4. 연금저축공제 등록: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5. 월세명세서 등록 : 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월세명세서

- ※ 1번~5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업로드한 자료는 자동등록 되오니 수기발급 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료는 별도 입력후 출력물 제출 (수기 입력하는 자료들은 필히 두 번씩 확인 정확히 입력)
- ※ 제출기일(2024년1월22일)을 꼭 엄수,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부정신고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통보되며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납부지연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되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1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 개인인증서 지참후 본인이 직접 제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재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2023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분	공제 한도	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p>12.31현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15%;">부양가족</th> <th style="width: 15%;">직계존속</th> <th style="width: 15%;">직계비속(동거입양자)</th> <th style="width: 15%;">형제자매</th> <th style="width: 15%;">위탁아동</th> <th style="width: 15%;">수급자</th> </tr>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 (1963.12.31.이전 출생)</td> <td>20세 이하 (2003.1.1.이후 출생)</td> <td>60세 이상 20세 이하</td> <td>18세 미만 (2005.1.2.이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able> <p>*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소득에 종류: 종합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p>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1963.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2003.1.1.이후 출생)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2005.1.2.이후)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1963.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 (2003.1.1.이후 출생)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2005.1.2.이후)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h style="width: 15%;">공제대상</th> <th style="width: 15%;">경로우대(70세 이상) (1953.12.31. 출생자)</th> <th style="width: 15%;">장애인</th> <th style="width: 15%;">부녀자(여성) (기혼○/미혼△)</th> <th style="width: 15%;">한부모(남.여) (배우자x, 기본공제대상○)</th> </tr> <tr> <td>공제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 <small>(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능)</small></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able> <p>*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미만 충족</p>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1953.12.31. 출생자)	장애인	부녀자(여성) (기혼○/미혼△)	한부모(남.여) (배우자x, 기본공제대상○)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small>(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능)</small>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1953.12.31. 출생자)	장애인	부녀자(여성) (기혼○/미혼△)	한부모(남.여) (배우자x, 기본공제대상○)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small>(미혼.이혼.사별한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세대주가능)</small>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	연 4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세대주 (불입액 40%)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12. 31.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상환액 40%) - 국민주택규모(85㎡) 임차, 계약서 입주일 또는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첨부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500만원 ~1,800만 원 한도	<p>12. 31.현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30%;">조건</th> <th style="width: 20%;">주택수</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2.31. 현재 세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1주택</td> <td>거주 여부 불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주택 이상</td> <td>공제대상 아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주택</td> <td>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 세대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분양권</td> <td>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td> </tr> </tbody> </table> <p>-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것 차입시기: 2013.12.31이전 - 취득당시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 2014. 1. 1.이후 - 취득당시기준시가 4억원 (제한없음) 2019. 1. 1.이후 - 취득당시기준시가 5억원 (제한없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60%;">상 황</th> <th style="width: 40%;">공 제 여 부</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제대상</td> </tr> <tr> <td>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대상 아님</td> </tr> <tr> <td>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 </tr> <tr> <td>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td> </tr> <tr> <td>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td> </tr> <tr> <td>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td> </tr> </tbody> </table> <p>(첨부서류: 등본, 등기부등본, 취득시개별주택공시가격(2008.1.1.이후))</p>	조건	주택수	비고	12.31. 현재 세대주	1주택	거주 여부 불문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주택분양권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	상 황	공 제 여 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아님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조건	주택수	비고																										
12.31. 현재 세대주	1주택	거주 여부 불문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주택분양권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차입																										
상 황	공 제 여 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공제대상 아님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가 전액 공제가능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이월액 (기간 10년)																										

항목	구분	공제 한도	공제 요건	
그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7천이하 300만원 7천초과250만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비: 80% ※ 총급여 7천만원이하: 도서,공연,미술관등 40% (4/1~12/31), 전통시장 50% (4/1~12/31)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 8세이상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2인 초과 1인당 30만원
		출산·입양	전액	2023년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5천5백원(4천만원) 이하 15% 5천5백원(4천만원) 초과 12% (근로소득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만원, 총합소득금액 4천만원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한 금액 900만원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연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연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등	한도없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시력보정용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출산1회당 200만원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	300만원×15% (1인당)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초중고생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1인 50만원), 체험학습비(1인 3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대학생	900만원×15% (1인당)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수강지원금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 액 공 제	고향 사랑	10만 원 이하	본인이 지출한 고향사랑기부금중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본인이 지출한 고향사랑기부금중 10만원 초과 15%
	정치 자금	10만 원 이하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중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중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세액공제
	기 부 금	특례	해당액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지출한 기부금 (단, 우리사주,정치자금,고향사랑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가능) 공제대상 기부금을 계산한 후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종합소득금액-특례기 부금금액)*30%		
	일반(종교 외)	기준소득금액 30%		
	일반(종교)	기준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미분양주택확인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월세액	연 1,275천원 (연 1,125천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 금공제 안 받은 경우 세대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주거용모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15% (첨부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증)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령 81조 10항)

참고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례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중 합 소 득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금액 크기 관계없음)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기타소득	•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선택 안 한 경우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